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타인 비방과 개인의 명예 보호[1)]

1. 사건개요

(1) 헌법재판소는 2개의 재판소원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이를 병합하기로 하였다. T-6.155.024 사건의 경우, A는 자신의 블로그 "낙서"(Garabatos)에 "판사에 의한 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판사로서 G의 노동법 위반행위[2)]와 도덕적 자질[3)]을 문제 삼는 글을 게재하고, 이 내용을 G의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Facebook)에도 공유하였다. G는 초콘타 1심 형사법원에 보호소송[4)]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 사건이 사인 간의 문제에 해당하고 G가 무방어 상태에 있지 않으며,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이에 G는 초콘타 2심 형사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G가 형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지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가 보호소송이라고 강조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확장 규모를 고려하면 G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수가 통제 불가능하므로 G가 무방어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G가 공무원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에 놓일 수 있으나 그녀에 반하는 모욕 또는 욕설까지 정당화되지 않으며, G의 징계 내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진실성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게재하였으므로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법원은 A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해 세스낄레 지역의 변호사인 N이 코멘트를 남긴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주문을 통해 A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내용을 정정할 것을 명하였

---

1)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제7부 2018년 4월 6일, 결정번호 T-117/18.
2) 판사 G의 부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생활에 간섭하고(예를 들어, 직원의 임신 계획에 대해 재고하라고 언급하는 등), 옷 입는 것이나 개인의 습관에 대해 비판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한다.
3) 세스낄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무원임에도 여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큰 이득을 보았다.
4) 보호소송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다. 다만 상기 법원의 판사는 이 사건이 비전통적인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인 활동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T-6.371.066 사건을 보면, Y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물에 J 및 그의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하고, J가 자신의 형을 살인한 "보잘 것 없고, 비열하고, 더럽고, 반역자"라는 단어 표현이 들어간 글을 게재하였다. J는 Y에 의해 자신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사생활권, 초상권, 무죄추정의 권리, 신체적·정신적 완결성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쿠쿠타 제8민사부 법원에 보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2017. 5. 5. 이 사건이 사인 간의 문제에 해당하고 일반 소송 즉, 형사재판에 의할 수 있는 만큼 보호소송이 부적절하다고 보았고, 나아가 J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 J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2) 제기되는 문제점

T-6.155.024 사건에서 G가 징계 내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A의 블로그에 공개하고 G의 사진을 덧붙여서 A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이, 헌법에서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에 대해 요구하는 진실성, 공정성,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또, A가 게재한 것에 대해 N이 코멘트를 한 것이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한편, T-6.371.066 사건에서 Y가 J에 대해 자신의 형을 살인한 책임이 있다고 서술하면서 J 및 그의 가족 사진을 Y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이 J의 사생활권,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결정요지[5]

(1) 보호소송(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A)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6조[6]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 사인에 대한 보호소송(tutela contra los particulares)이 진행된다고 반복해서 설시해왔다.[7] (ⅰ) 사인이 공적 서비스(servicio público)를 제공하는 경우, (ⅱ) 사인의 행위가 집단의 이익(interés colectivo)에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청구인이 사인에 대해 종속(subordinación) 또는 무방어(indefensión)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사실의 상황(circunstancias fácticas)이 충돌됨에 따라 한 개인이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나 타인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무방어의 상태는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가 사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자신의 기본권의 위협 또는 침해를 차단 또는 반대하기 위한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개별 사안에서 법관은 청구인이 무방어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고, 나아가 사인에 대하여 보호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단을 통해 관계되는 자의 사생활이 드러나 정보나 의사의 폭로를 초래하는 열등(inferioridad)한 사실의 상황을 무방어의 상태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다.[8] 구

---

5) 결정요지 (1)에서 (4)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결정 원문에도 해당 요지의 제목에 "판례의 반복(reiteración de jurisprudencia)"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6) 헌법 제86조: 모든 개인은 시간과 장소, 우선 및 약식절차에 의하든, 본인 또는 대리인이든 불문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즉시 보호하고자,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 또는 위협이 발생된 경우, 보호소송을 법관에게 제기한다. 보호는 피청구인에 대해 이행 내지 불이행을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하고,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회부한다. (이하 생략)

7) Sentencias T-1085/04, T-1149/04, T-1196/04, T-735/10, T-012/12, T-634/13, T-050/16, T-145/16.

8) Sentencias T-921/02, T-787/04, T-634/13.

체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과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게재자(피청구인)가 이러한 대상에 관한 공개 방법을 통제하고, 광범위한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영향을 받는 자(청구인)의 입장에서 무방어의 사실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9]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특성상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게재자에 대한 무방어 즉,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한바, 비록 피청구인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보호소송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B) 보호소송이 보충적 성격을 지니는바, 피해자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사생활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제기하며 형사재판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일반적 절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호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0] (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만, 형사책임으로 침해된 권리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해줄 수 없다면 보호소송을 통해 어떤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기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ⅱ)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의도하지 않고, 시정(rectificación)만을 바랄 수 있다. (ⅲ) 보호소송에 의한 조속한 해결은 명예훼손의 잠재적인 여파가 시간이 지나서 신뢰할 만하고 실제적인 내용인 것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도 상이하고, 책임의 요건도 다르다. T-6.155.024 사건에서 G는 형사법원에 A와 N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침해되었던 G의 기본권이 회복되지 않고, 형사법원의 법관은 헌법재판관과 같이 기본권의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주문을 명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T-6.371.066 사건에서 J가

9) Sentencias T-643/13, T-015/15.
10) Sentencias T-110/15, T-357/15, T-277/15, T-693/16, T-695/17.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살인자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J(나아가 그의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C)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에 따르면, 명예권이나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은 자가 보호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해당 대중매체를 상대로 먼저 오류,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11][12] 통상적으로 정정 신청은 대중매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2010년 T-263 결정에서 "언론인(periodista) 또는 폭넓은 기술력에 기인하여 인터넷과 같은 자원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자(persona que informe)"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양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T-550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무례함이 보장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요건으로 정정 신청의 대상을 가령,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특히, 이를 통해 언론 활동이 행해지는 경우 - 와 같이 다른 정보공개 채널(otros canales de divulgación de información)로까지 확대해서(extensible)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를 사인이 유포한 것이라면, 유포에 책임이 있는 사인에 대해 사전에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앞서 본 대중매체의 경우처럼 보호소송의 전제로 요구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사생활권, 명예권[13],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및 초상권

11) Sentencias T-369/93, T-787/04, T-040/13, T-256/13, T-904/13.

12)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규칙 제42조: 요건. 다음의 경우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보호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⑦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 정보의 표기나 게재물의 사본 및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의 효과가 보장되는 게재가 없었다는 것을 첨부해야 한다.

13) 스페인어로 derecho a la honra로 표현된다.

콜롬비아 헌법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권(derecho a la intimidad)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타인 - 국가 또는 사인 - 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배제되는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동시에 민주적으로 능동적인 주체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14] 이러한 의미에서 사적인 것에 해당하는 영역은 명의를 가지는 자의 동의나 권한있는 당국에 따른 명령을 통해서만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derecho al buen nombre)[15]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갖는 생각(concepto) 또는 명성(reputación),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그를 알고 대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한 개인이 받아야 할 존경(deferencia)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6] 이 권리는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나 공격적인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든 침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 개인에 대한 생각이나 명성이 왜곡되게 되고, 나아가 해당 개인의 존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때, 법관은 제시되는 사실의 상황을 검토하여 이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증명되는 경우 권리의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상권(derecho a la imagen)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신의 개성 또는 정체성을 직접

14) Sentencias C-640/10, T-015/15, T-050/16.
15) 원래 직역하면 “좋은 이름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겠지만,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로 의역하였다.
16) Sentencias T-977/99, T-405/07, T-634/13, T-050/16.

표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상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설시하였다. 2012년 T-26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이미지 사용에 관한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작성하면 정보와 개인의 데이터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권리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을 함축하므로, 이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법의 내용은 비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가지는 교환, 분석 및 처리에 관한 강력한 도구 덕분에, 정보를 알리고,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지녔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을 시작할 당시 이것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관계되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점이 나타나게 된다.

(3)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그 한계

콜롬비아 헌법 제20조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하고, 대중매체를 창설할 자유가 보장된다. 이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진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정정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 검열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libertad de expresión)에 대한 보장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 즉, 정보의 자유(libertad de información)는 모든 사실이나 상황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의 검색, 발신과 수신을 보호하고자 하며, 엄격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는 의견의 자유(libertad de opinión)는 통신수단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 의견 및 생각을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정보의 자유의 행사는 전파하려는 것을 보급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 시설(infraestructura adecuada)의 필요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행사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facultades físicas y mentales)만이 요구될 따름이다.

한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부담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무는 발신하는 정보의 질(質)과 관계되는데 정보가 진실하고 공정해야 하고, 제3자의 기본권 - 특히,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 을 존중해야 한다. 정보의 진실성 및 공정성의 원칙(principios de veracidad e imparcialidad de la información)과 관련하여, 진실성은 내부적 한계(límite interno)로 작용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진실성을 입증 가능한 사실이나 사실적 성격의 진술(enunciados de carácter fáctico)이라고 설시하였고, 단순한 의견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7] 다만 사안에 따라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사실의 정보가 실제 현실과 다른데도 발신인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공개되는 한 진실성의 원칙에 반한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보가 의견 또는 가치의 판단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마치 확실하고 단정적인 사실로 제시된다면, 진실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18]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1993년 T-080 결정을 통해 정보의 공정성의 원칙의 내용에서 사실에 대한 해석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과 의견의 중간에 있다(está a mitad de camino entre el hecho y la opinión)고 판단하고, 그렇기에 정보를 발신하는 이로 하여금 관련 사실에 대한 비난과 그 출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객관적인 소식을 전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기자가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 다양한 출처를 통해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하고, 수집되고 확인된 내용이 자신의 편견, 개인적 평가 또는 일하는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19]

---

17) Sentencias T-080/93, T-074/95.
18) Sentencia T-040/13.
19) Sentencia T-040/13.

(4) 명예권이나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수단으로써 진실의 항변

최근 2017년 T-695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정보가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진실의 항변'(*exceptio veritatis*)에 대해 설시하였는데, 명예권이나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진실의 항변이 형사소송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20조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información veraz e imparcial)를 발신하고 수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메시지, 데이터, 뉴스가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루머, 허구, 악의에 근거한 것이면 헌법 제20조에 따른 보호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제3자의 명예권이나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기 결정에 따르면, 명예권이나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에 반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성명(聲明)에 대한 진실의 항변은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에 대해 형법 또는 헌법 절차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되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진실의 항변은 정보가 정확하다는 명백한 증거(prueba irrefutable)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호소송의 경우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증명하는(demostrar que se obró con la suficiente diligencia) 것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진실의 항변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보호소송에서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의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진실성의 기준(criterio de veracidad)을 발전시킴으로써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 자유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해당 정보가 의심의 여지없이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출처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요청하는 것이다.

(5) 이 사건에서의 판단

A) T-6.155.024 사건에서 우선 A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 의견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보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견해가 나누어졌다. G는 A가 언론인이 아니고, 그가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대중매체로써 법인격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닌바, 자료 출처의 보호와 같은 이 직업에 따른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A는 저널리즘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을 알린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세스낄레 지역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인의 자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1998년 C-087 결정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법 체계에서 정보의 자유를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 결정에서는 언론인이나 대중매체와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만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매체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는 언론 활동의 특성상 일정한 의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격을 보유하였다거나 직업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그가 행하는 활동의 성격(naturaleza de la actividad que se cumple)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A가 블로그에 게재하고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은 언론인으로써 활동을 한[20] 것인바, 의견 또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정보의 자유의 측면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본 재판부는 A가 게재한 내용이 G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이거나 함께 근무한 자들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는(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었다)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G에 대해 여러 사건들이 계류 중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A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그가 파악한 정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G에게 확인을 거치지

20) A는 유명인으로 2006년부터 블로그 "낙서"를 운영해오며 지역의 공익과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주로 전하고 있다. A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언론인, 정기 간행물 "낙서"의 편집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않았다.[21] 이 사건에서 공개된 정보는 G의 판사직 수행에 명백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써, 이를 게재하는 매체는 최소한의 자료 출처를 밝히고 G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적어도 검증하고 나서 게시물로 작성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만 매체는 실질적으로 정보의 신뢰도와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사실의 대조(confrontación de los hechos)만이 독자들로 하여금 제기되는 사항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A의 충분한 주의 또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진실의 항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바,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함축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개된 내용이 진실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문, 조작에 의해 수신자로 하여금 혼란이나 오류를 초래하는 부정확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22]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서술 가운데 일부는 게시글의 목적 즉, G의 노동법 위반행위와 판사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를 알리려는 것과 관계없는 G의 사생활에 관하여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G가 징계 내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이 자신의 권한을 통해 알 수 있는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범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23] 그렇지만 고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언론인과 대중매체는 신중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관할 당국에 의해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수신인에게 오류 또는 혼란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A가 사실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독자

21) G는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A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A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에서 불특정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판사의 의무를 A가 정확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G가 A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먼저 제출했어야 된다고 보았다.

22) Sentencias T-040/13, T-439/09, T-298/09.

23) Sentencias T-040/13, T-066/98, T-259/94, T-626/07.

의 혼란을 막기 위한 충분한 정확성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진실성의 원칙을 간과한 것으로서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본 재판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미지, 비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에 관해 명의를 가지는 자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G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는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으며, 더욱이 명의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코멘트를 이미지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N이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본 재판부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며 N의 코멘트가 의견의 자유에 따라 행사된 것이고 G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없이 N의 개인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B) T-6.371.066 사건의 경우, Y의 표현의 자유와 J의 명예권, 초상권이 충돌된다. 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우선시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른 기본권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기 가정은 반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없는 권리가 아니라는(no es un derecho que carece de límites) 점을 강조하였는데, 정당한 목적이 아닌 해를 끼치고 공격적인 의도(intención dañina y ofensiva)가 나타나 있는 무례하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균형을 상실한 표현이 담긴 비방의 문구에서 명예를 훼손하고(difamatorio), 편파적이고(parcial), 오류가 있다면(erróneo), 헌법 제20조에 따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권리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권리들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한계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즉, 인터넷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여러 차례 설시해왔

다.[24]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던 목적 중의 하나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함이었고, 한편 가족을 잔혹하게 잃은 피청구인의 고통도 전달되었지만, 페이스북에 사용된 표현들은 표현 또는 의견의 자유의 행사 한계를 넘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면서, 피청구인의 형을 살해한 방법과 동기에 대해 기술하였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피청구인 형의 살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있지만 형사재판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구인의 책임 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판결이 없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초상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에 관한 권리(derecho a la presunción de inocencia)에도 반한다. 이러한 단정(afirmación)은 어떤 식으로든 주관적 또는 의견의 범주에서 벗어나며, 오히려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죄를 범했다고 고발하는 것에 해당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게재한 것은 헌법 제20조의 보호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초상권이 중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3. 주문

첫째, 이 결정에서 제시된 이유에 따라 2017. 1. 25. 초콘타 2심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한다. 해당 형사법원의 판결에서 A에 대하여 청구인 G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초상권의 보호를 확인하고, 다만 N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둘째, 이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A가 블로그에 "판사에 의한 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공개된 정보를 이 결정에서 제시된 기

24) Sentencias T-050/16, T-145/16.

준에 따라 정정한다. 이러한 정정은 또한 A의 페이스북에도 공유되어야 한다. 한편, 공개된 G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A에게 명한다.

셋째, 보호소송을 기각한 2017. 5. 5. 쿠쿠타 제8민사부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 J의 명예권, 좋은 평판에 관한 권리, 초상권의 보호를 확인한다.

넷째, 이 결정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J와 관계되는 Y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게재를 삭제하도록 Y에게 명한다.